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13호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순 천 시 의 회 의



##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 2. 주요내용

####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전체 개정

- 현행 :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기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 변경 :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리 하되,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삭제

○ 제9조(협회의회의 회의) 제3항 및 제4항 개정

- 현행 : 회의 개최 일시,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변경 : 회의 개최 일시,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협회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2. ~ 1. 17.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jw1028@korea.kr](mailto: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하되,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위원”을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를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출석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